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차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7.

발 의 자 : 차지호 · 신정훈 · 박희승  
이해식 · 김준환 · 황명선  
윤종균 · 김현정 · 김영진  
박해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,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·추진·평가, 경제안보 대응,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,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·감독권을 강화하고 있음.

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재외 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공로 점검·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,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8조 신설)



##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직무감찰단) ① 국무총리는 공관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(이하 “직무감찰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직무감찰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관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직무감찰단은 제2항에 따른 감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직무감찰단은 제2항에 따른 감찰을 종료한 경우 감찰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.

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찰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.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찰 결과 공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관의 장등”이라 한다)이 「외무공무원법」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

장관에게 해당 공관의 장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⑥ 직무감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8조(직무감찰단) ① 국무총리는 공관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(이하 “직무감찰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직무감찰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관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직무감찰단은 제2항에 따른 감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④ 직무감찰단은 제2항에 따른 감찰을 종료한 경우 감찰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찰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.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</p>

찰 결과 공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관의 장등”이라 한다)이 「외무공무원법」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해당 공관의 장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⑥ 직무감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